

의안번호 제102호

# -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7. 23.	

# -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102호

제출일:2021. 7. 23.

제출자: 논산시장

제안설명자: 마을자치분권과장

### 1. 제안이유

○ 논산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 주체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밀착형 근린서비스를 제공·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 고자 함.

#### 2. 주요내용

#### O 위탁시설(사무)

► 논산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 위탁기간: 2021. 09. 01. ~ 2024. 8. 31.(3년간)

O 사업내용: 논산시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O 소요인원: 15명(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

O 소요비용: 연1,417,481천원 / 1년

- 인건비: **545,081**천원 - 운영비: **872,400**천원

#### O 위탁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7조

# 3. 現 논산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현황

**○** 現 관 리 자 : 읍·면·동장

O 읍면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

읍면동	프로그램수	이용인원	운영예산	비고
합계	105	2,511	730,830	
강경읍	6	240	43,720	
연무읍	7	215	44,820	
성동면	6	112	35,560	
광석면	9	225	59,100	
노성면	4	85	32,780	
상월면	9	205	53,800	
부적면	8	344	57,580	
연산면	7	161	58,580	
벌곡면	9	164	67,560	
양촌면	9	215	60,420	
가야곡면	6	87	38,380	
은진면	8	174	56,300	
채운면	6	105	35,560	
취암동	7	112	56,520	
부창동	4	67	30,150	

○ 주요시설: 다목적실, 회의실, 주민자치회 사무실

○ 운영시간 : 평일 9:00 ~ 21:00

#### O 주요업무

-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조사 후 확정

- 강사관리 : 참여 강사 모집 및 채용, 강사비 지급

- 수강생관리 : 수강생 모집, 등록, 출석확인

#### O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 2019. 6. 10.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전부 전환

####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정수		25명 이내	20~30명
위원 연임		2년 임기, 위원장 1회 연임 가능 위원 연임제한 없음	2년 임기, 1회 연임
위촉권자		읍·면·동장	논산시장
권 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행정협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행정협의 행정시무 위·수탁,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기 타 -		-	주민총회, 사무국 설치, 의무교육 이수 4시간 이상

#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① 다른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구 분	직 영(市)	위 탁
장 점	<ul><li>운영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li><li>투명한 예산 운영으로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li></ul>	<ul><li>● 주민자치 활성화로 주민자치 기반 마련</li><li>● 행정 개입 최소화로 실질적인 주민밀착형 근린서비스 제공 가능</li></ul>
단 점	<ul> <li>관(官) 주도 운영으로 주민자치회의</li> <li>역할 축소(행정 의존성↑) → 자치역</li> <li>량강화 기회와 주민자치 동력 상실 우려</li> </ul>	●운영 초기 경험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 인 관리 감독 필요

-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공공성과 책임성 및 안정성 확보는 쉬우나 약15년 동안 직영 체제로 운영  $\rightarrow$  읍·면·동 환경에 맞게 운영 체계 변화 필요
- O 관(官) 주도의 계속적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치분권과 주민자 치 실현에 역행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부여의 필요성이 있기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구분	직 영(市)	위 탁
장 점	<ul> <li>서비스 공공성 및 운영관리의 신뢰성</li> <li>확보가 쉽고, 책임소재 명확</li> </ul>	<ul> <li>◆주민의 요구사항을 탄력적인 수용이 가능하여 주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임</li> <li>◆주민자치회 또한 주민 대표기구로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할 의무가 있어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가능</li> </ul>
단 점	• 공공기관의 복잡한 운영절차로 인해 시기 적절한 서비스 제공 어려움	●관리 운영능력의 여부에 따라 안정성 확보 미흡

○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우려되는 안정성의 문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주민자치회 상근 직원의 역량교육을 통해 보완 가능하며, 주민 수요 맞춤 측면에서 위탁운영이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③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구분	직 영(市)	위 탁
장 점	●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가 쉬움	●시와 주민자치회와의 상호협력 및 보완 관계를 통해 투명성 확보 가능
단점	• 업무 추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행위로 탄력적 행정 및 적극행정 위축	●과도한 통제 시 민간 자율성 저하 및 관리·감독비용 증가

○ 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운영주체의 차이가 아닌 관리·감독 방식에 따라 그 효율성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적정한 관리·감독으로 민간 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5. 민간위탁 운영 방안

O 위탁기간 : 2021. 09. 01. ~ 2024. 8. 31.(3년간)

O 위탁사무 :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O 소요인원 : 15명

※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15개소)에 상근 직원 1명 채용

O 소요비용 : 연1,417,481천원

- 인건비: **545,081**천원 / 상근직원 **15**명

- 운영비: 872,400천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비 등

O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산<del>출근</del>거

(단위: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총계		1,417,481,430			
	소계		545,081,430		
	직접 인건비	기본급	323,136,000	81,600원*22일*15명*12개월	
		유급휴일수당	88,128,000	81,600원*6일*15명*12개월	
		식비/교통비	18,000,000	100,000원*15명*12개월	
가 므 크 이	간접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35,772,000	직접인건비/12월	
사무직원 인건비		국민연금	37,013,760	직접인건비*9%	
		건강보험료	28,212,710	직접인건비*6.86%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250,104	건강보험료*11.52%	
		고용보험료	7,608,384	직접인건비*1.85%	
		산재보험료	3,960,472	직접인건비*0.963%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소계		872,400,000		
	사무국 운영비	회의 수당	162,000,000	30,000원*30명*15개소*12개월	
주민자치 센터 운영비		일반수용비	45,000,000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 등*15개소	
		공공운영비	30,600,000	통신요금 70,000원*15개소*12개월 우편요금 20,000원*15개소*12개월 전기요금 80,000원*15개소*12개월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	604,800,000	480,000원*7명*15개소*12개월	
		재료비	30,000,000	프로그램 재료 등 구입*15개소	

<sup>※</sup>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현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어있으며 그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고자 함

#### O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7조

## 6. 실무부서 종합의견

-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6년 제정된 이후 15개 읍·면·동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하여 직영 운영한 지약15년 되었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와 그동안 민관협업으로 추진되어 업무의 흐름과 운영현황은 공유되어 왔음.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정책으로 논산시 또한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월 1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로 전부전환,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음.
- 조례상 주민자치회 기능에 "수탁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를 수행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위탁사항은 법적근거가 충분하며, 직영운영이 공공성과 책임성, 예산운영의 안정성은 확보될 수는 있으나 내부 인사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업무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 또한 갖고 있음.

- 관(官) 주도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의 수요맞춤형으로 근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보다 탄력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운영 초기 경험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각 읍면동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지속적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며, 주민자치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의 동력을 마련하고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성구 등 타 시·군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1. 7. .

# 마을자치분권과장 윤 승 우

논산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 관련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운영 및 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자치 지원, 마을 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 2. 협의 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3. 수탁 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 4.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관련 업무

# ○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운영)

-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 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한다.
- 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 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